

과학기술부 고시(1)



김 창 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규제부 규제정책실 실장

지난 호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모두 아홉 번에 걸쳐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소개한 원자력법령에 이어, 이번부터는 과학기술부고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관련되는 고시가 20여종에 이를 뿐 아니라, 그 내용이나 범위가 방대한 것도 적지 않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될 것이므로, 우선 이번에는 전체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중요한 고시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술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방사선과 관련된 고시라 하더라도 물리, 화학, 생물, 계측, 분석, 차폐, 열전달, 피로해석 등 워낙 다양한 학문분야를 섭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전문적인 내용도 적지않아, 솔직히 필자의 능력으로 일일이 필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부 지엽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은 가볍게 언급하고자 하니 오직 독자의 양해를 바라고자 한다.

1. 고시의 성격 및 형식

고시는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공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내려지며, 대외적이기는 하지만 명령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법규성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처분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원자력법령에 근거하여 공포된 과학기술부의 고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법령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또

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에 따라” 라는 표현으로 위임된 사항은 모두 고시의 형태로 공포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다만, 해당 위임사항이 수록되는 고시의 명칭이나 형식은 별도로 결정되는데, 내용의 유사성이나 시급성 또는 전체 분량 등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또는 여러 조항이 통합되어 고시되기도 한다.

한편, 고시는 각각의 명칭과 함께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면서 공포된다. 예를 들어, 고시 제2002-99호와 같은 번호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번호는 공포된 년도를 가리키며, 뒤의 번호는 당해연도에 공포된 과학기술부고시의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형식은 여타 행정부처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나름대로의 장점과 장기간의 이용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스러운 때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시가 얼마 되지 않던 시절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방사성동위원소와 관련된 고시만도 20여 개나 되고, 특히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최종 개정본과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고시번호의 확인에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고시에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개정회수와 함께 관리하면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행히 최근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시의 현황

원자력분야에 관한 과학기술부고시는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선의 2개 분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과 관련된 고시는 방사선분야에 포함되는데, 고시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또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가. 방사선 방호분야

방사선을 취급함에 있어 수반되는 방사선피폭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포함하여 관련 기술기준이 이에 해당된다.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2-23호)

방사선방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고시로서, 면허시험에 대비하거나 현장에서의 방사선방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지침서라 할 수 있다.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함께 연간섭취한도, 유도공기중 농도, 방사성동위원소의 정의에 따른 수량 및 농도값을 비롯하여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임신부의 선량한도, 차폐물의 설계기준, 긴급시의 방사선작업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보고서 양식이 별표로 수록되어 있다.

■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제2001-18호)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의료분야의 특별기준과 연계하여 고시되었으며, 치료용 방사선 조사장비의 교정, 진료환자의 배설물관리, 격리 및 퇴원에 대한 정량적 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치료용 조사장비의 교정과 관련하여 “의학물리사”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한데, 최근 과학기술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의학물리화학회의 협력을 받아 의학물리사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제2001-20호)

밀봉선원을 대상으로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된 기준이다. 사용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밀봉선원의 건전성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종사자의 방사능 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누설점검은 매1년의 주기로 하며, 방법으로는 건조문지름, 습식문지름, 가열 및 침수시험 각각에 대해 시험조건, 절차 및 합격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방사능량이 적거나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설점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량적 확인이 필요하겠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1-35호)

이 규정은 방사선피폭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그 인과확률을 산출할 수 있는 공식까지 주어져 있으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광범위한 역학조사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단시일 내에 제시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원자력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고시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므로 차후 법령 개정시 보완이 필요하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폐암의 경우에는 방사선피폭과 함께 흡연의 영향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래저래 흡연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나. 인 · 허가 관련분야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허가 대상을 포함하여 인 · 허가 제출서류의 작성요령, 방법 및 기준이외에 사용과 관련된 모든 제반 절차 및 지침 등을 망라하고 있다.

■ 방사선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2-02호)

업무대행자가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대행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전국을 수도권 · 충청

권·영남권·호남권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01-03호)

정량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안전성이 높아 최종 소비자에게는 규제를 하지 않는 상품화된 소량의 방사성동위원소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외물질로 야광시계, 연기감지기, 방사선계측기 검·교정 선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은 이미 시장에서 일반화된 이후 규제기관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최종소비자의 규제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후에 평가될 때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틈틈이 시장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상품을 조기적발 할 수 있는 규제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01-04호)

방사선발생장치의 정량적 정의와 함께 용도에 의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정량적 정의는 방사선의 최대에너지(5keV) 및 표면방사선량률(1 μ Sv/h)로, 용도로는 의료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료 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는 보건복지부에서 규제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법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 방사선발생장치 적용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01-09호)

점점 빨라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새롭게 개발되어 나오면 즉시 이 고시에 수록하여 규제를 하면서, 차후 원자력법이 개정되는 시기를 빌려 고시에 수록된 내용을 법령에 옮기게 된다. 현재는 두 가지의 핵융합실험장치가 수록되어 있다.

■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고시 제2001-10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중요서류 중의 하나인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모두 13개 항목에 대한 상세 작성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이 요구되는 대단위 사업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기준 (고시 제2001-11호)

판독업무자가 등록서류의 하나로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세부지침과 표준 품질매뉴얼의 구성 및 주요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흔히 18 Criteria라 하는 기준에서 일부

항목이 제외된 형태를 띄고 있다.

■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01-12호)**

고시 제2001-11호와 함께 판독업무자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다. 판독업무자가 판독하는 개인선량계로, 필름선량계 및 열형광선량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의 정의, 성능검사의 신청 및 절차, 성능기준의 적용 등 판독업무에 대한 제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재성능검사와 부판독기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최근 개정시 새로 도입되었다. 대체로 내용이 어렵고 전문적이므로 일반인의 이해가 쉽지 않다.

■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지침(고시 제2001-21호)**

비파괴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다. 즉, 일시적 사용장소에서 이동사용기간이 6월 이상인 때에는 원자력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일전까지 변경신고를 하고 완료일 30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되, 6월 미만인 때에는 이 고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전날, 심지어는 즉시 검사신청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비파괴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동사용기간이 1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5일 전까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비파괴검사진흥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고시 제2002-03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중요서류 중의 하나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개 항목에 대한 세부작성지침으로, 모든 종류의 허가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선원별 및 허가별로 세분하여 규정하면 보다 편리할 것이므로, 향후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허가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고시 제 2002-04호)**

정기검사 주기 1년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의 양호한 방사선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 할 수 있다. 면제기준은 형평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10개의 정량적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각종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5점 감점, 최근 1년 이내에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점 10점 등으로 계산하여 70점 이상이면 면제 대상이 된다.

■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규정 (고시 제2003-04호)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판매분야의 특별기준과 연계하여 고시되었으며, 방사선기기의 현장설치를 위한 보관시설의 기준과 누설점검을 하여야 하는 방사선기기의 대상,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및 폐기와 관련하여 판매자의 의무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다. 교육훈련 및 시험분야

이 분야는 면허시험과 관련된 자격요건 및 그 산출방법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 원자력관계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02-14호)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종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경력에 갈음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2-13호)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비파괴검사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의 방법, 요건 및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시설, 장비 및 강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평가하여 그 기록을 5년 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비파괴검사업체 종사자의 교육은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교육시간 및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 방사성 폐기물분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또는 처분과 관련된 절차, 방법 또는 기술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01-30호)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을 위한 절차, 방법 및 정량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자체 처분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자체처분 절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그리고 자체처분을 위해서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제한, 표지제거, 분리저장 및 혼입방지 등의 기준도 들어 있다. 별표에는 자체처분의 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별지로 자체처분 절차서 표준문안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고시 제2001-31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을 위한 설비기준 및 취급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소각은 원자력법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나, 실질적으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어찌되었거나, 법에서 위임된 소각설비에 관한 기준과 소각처리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환경관련 기술기준을 참조로 제정되었다.

■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분류, 수거 및 인도규정 (고시 제1990-7호)

원자력법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지된 규정이다. 즉,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의 추진이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원자력법에서도 관련규정이 삭제되었고, 따라서 관련고시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면서 산업자원부 고시로 대체된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부고시와 산업자원부고시 간의 큰 차이는 없으며, 주요내용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위탁처분을 위한 분류, 수거 및 인도기준과 수거용기의 종류 및 크기와 함께 처분비용이 규정되어 있다.

마. 방사성물질의 운반분야

방사성물질의 포장 및 운반과 운반용기의 제작 및 사용검사와 관련된 각종 절차, 요건 및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1-19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설계승인서를 받아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는 매 5년마다 사용검사를 받아 건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서는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의 항목, 방법 및 합격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와 이에 따른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1-23호)

이 고시는 명실공히 방사성물질 운반분야의 기본 지침이라 할 수 있는데, 내용이 방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앓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한다고 모두 운반규정에 정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분야, 비파괴검사를 위한 이동사용분야와 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업무대행자 정도가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나마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만 적용이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운반용기, 특히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고시의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련 규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각종 시험절차, 설

계승인을 위한 제반절차 및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바. 피폭관리분야

방사선피폭의 평가 및 관리와 행정적 후속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 내부피폭에 관한 규정이 첨부되었다.

■ 개인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3-06호)

방사선피폭관리를 위하여, 특히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우선,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가 각각 패용할 수 있는 개인선량계의 종류와 함께 개인선량계 등의 분실 등으로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판독 특이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 개인선량계의 교체시기 및 패용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의 설치, 운영 및 수행업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2-20호)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과 관련하여 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측정방법으로는 직접측정과 간접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은 때에는 사용시설 등의 공기중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평가하여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산출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사. 방사선기기

방사선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분야로서 향후 가칭 “방사선기기의 정기점검에 관한 규정”이 방대한 분량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1-22호)

방사선기기는 운반용기와 마찬가지로 설계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는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를 위한 제반 절차 및 기술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즉, 방사선기기의 설계기준으로 방사선차폐, 연동장치, 제어장치, 경고체계 및 선원용기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조기준은 완전방호형, 자체방호형, 캐비닛형, 무인격리형, 휴대개방형의 5개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구조기준은 범용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치인데, 결국은 방사선기기의 형태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방법으로 대폭적인 확대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향후 예정고시

아직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법령상 공포되어야 하는 고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이 고시들은 개정되는 법령의 발효에 맞춰 공포되어야 했었지만, 개발인력의 불충분이나 시급성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다. 필자가 알고 있기에 대부분 단기간 내에 고시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시의 제목이나 수록되는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이 고시는 업무대행자의 등록서류 중 하나인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관한 상세 지침이다.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이미 원자력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 방사선안전관리 체계
- 수행하고자 하는 대행업무의 절차
- 안전관리 절차
- 방사선비상 대응절차

■ 방사선피폭의 합리적 최소성취기준

이 고시는 ALARA개념의 구체화를 위한 실행요건에 관한 것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이미 원자력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 방사선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 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 선량저감에 효과적인 재료 및 기기의 사용
-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이 지침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상세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개요 및 제원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재질·구조 및 안전성 평가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성능시험계획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이 기준은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에 대한 허가기준의 하나로, 성능은 ISO등 관련 국제기준을, 품질보증은 18 Criteria를 참고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사선기기의 정기점검에 관한 규정

방사선기기의 정기점검은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열악한 환경에 의한 손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방사선기기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므로 일단은 범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서 차츰 보완 및 확대 개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에 관한 기준

이 고시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제작검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적용하는 기준이 규정될 것이다. 밀봉선원, 개봉선원 및 특수형 방사성물질 각각에 대한 검사방법, 절차 및 합격기준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사선응급구호 전문교육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령 제301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피난 등의 긴급조치를 수행하는 방사선응급의료구호 관련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고시될 것으로는 기대된다.

이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과 관련된 고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어떤 고시는 채 1장도 안 되는 간단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은 A-4용지로 약 6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수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 모든 고시가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은 물론이다. 다음부터는 몇 번에 걸쳐 주요한 고시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KRIA**

